

「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」 후속조치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사항 안내

- 「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」 등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발표된 대책 내용들을 법령에 반영하는 작업이 마무리되어 6.30일부터 시행될 예정

I. 주요 개정사항

1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자율성 제고

- ▶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**기업금융 기능이 강화되고 업무범위가 확대**됩니다.
- ▶ 증권사 내부 부서간 업무 겸영 범위가 확대되고, 계열사간 인력 겸직·파견 규제, 수수료 규제 등이 완화되어 **금융서비스를 통합**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됩니다.
- ▶ 증권사의 **고객대출(신용융자, 예탁증권담보대출 등) 관련 규제가 정비**되어 **투자자에게 보다 합리적인 서비스를**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.

(1)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기능 강화

개정취지

- 실물경제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
-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규모와 자본력에 걸맞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주문집행 등 신규업무를 추가

주요내용

- ① (i)지급보증, (ii)기업금융업무(인수, 모집·주선, M&A, 프로젝트파이낸싱)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만기 1년 이내의 신용공여*는 신용공여 한도(자기자본의 100%) 산정시 제외

* (예시) PF자문, 주선을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PF대출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사모 증권의 주선업무를 수행하면서 사모증권의 매수대금을 공급하는 경우 등

-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일반증권사와의 규제차익을 해소*하는 방향으로 신용공여에 대한 한도규제를 완화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급보증, PF 대출 등 기업 자금공급 기능을 확충

* 일반증권사의 경우 지급보증이나 기업금융업무 관련 대출에 한도규제가 없음

-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유발거래에 대한 건전성 관리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, 레버리지 규제 도입으로 신용공여 총량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감안

② 거래소에서 형성된 가격을 이용한 상장주식 장외 대량주문(최소 호가 규모 1억원이상) 매칭서비스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규 업무로 추가

* (예시)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다수의 연기금,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상장주식에 대한 대량 매수·매도 주문을 접수하고, 이를 거래소에서 형성된 시가의 가중평균가격 등을 이용하여 일정한 시간마다 일괄 매칭하는 서비스를 제공

- 상장주식 대량주문(블록딜) 체결의 효율성이 제고되고, 가격산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을 전망

(2) 금융서비스 통합 제공 기반 강화

개정취지

- 지나치게 경직적인 정보교류차단장치, 수수료 규제 등이 업무영역간 계열사간 협력과 시너지 창출에 장애가 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이해상충 가능성을 방지하는 범위안에서 관련 규제를 정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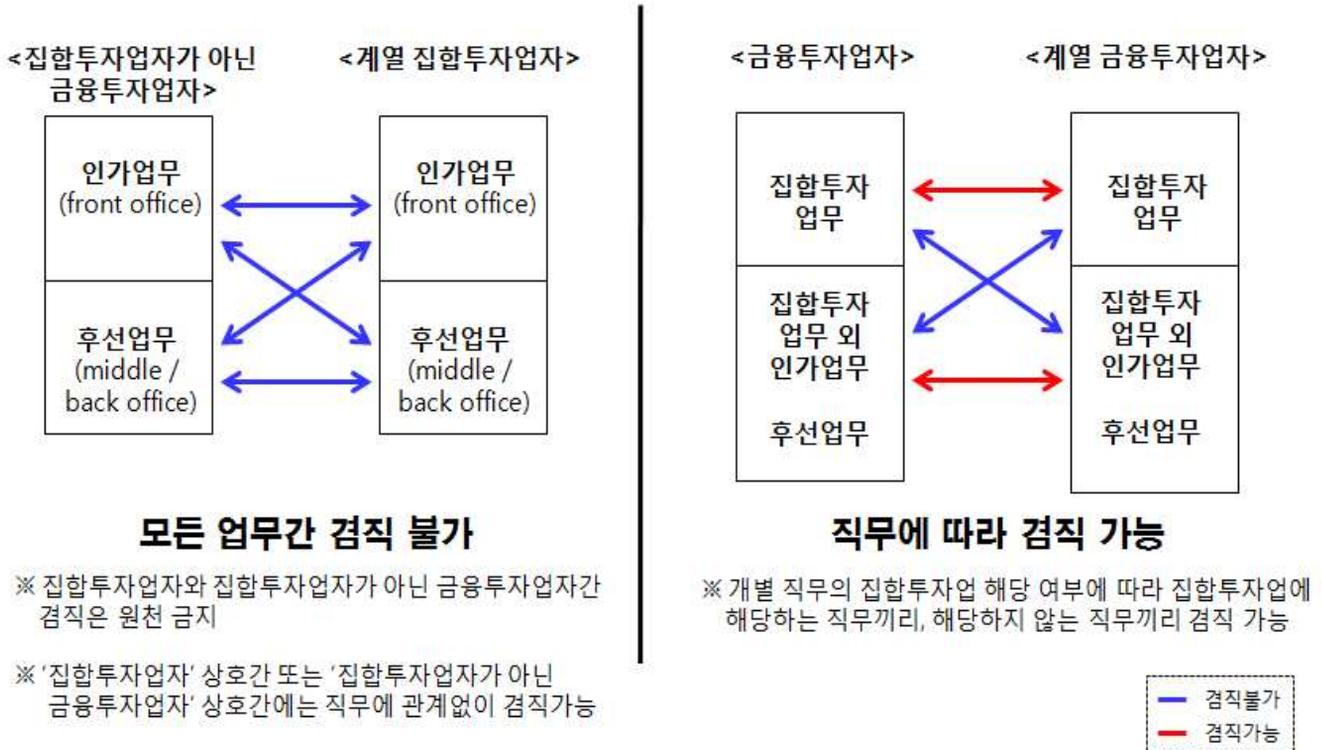
주요내용

- ① 금융투자업자 부서간 겸영가능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따라 회사의 상황에 맞게 최적의 업무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, 인력·설비 등의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해소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개선
- ① (기업금융부서) 기업금융부서에서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업무, 기업 금융과 밀접하게 연관된 헤지펀드 운용업무 등을 직접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 증권사 기업금융업무의 효율성을 제고
- 기업금융부서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또는 운용업무에 관한 정보교류차단장치를 완화
- * (1) PF 자문, 주선 업무와 연계하여 해당사업에 재산의 90%이상을 운용하는 펀드,
(2) 재산의 90% 이상을 기업 대출채권 매입 또는 그러한 방식으로 재산을 운용하는 특수목적기구에 대한 출자로 운용하는 펀드

- 기업금융부서가 펀드의 결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자문, 주선, 실사 등을 직접 담당할 부동산펀드·특별자산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업무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허용
 - * 타인의 자문 등에 따른 단순 투자업무는 고유재산운용부서에서 담당
-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업무, 위험관리 목적의 파생상품거래 업무를 기업금융부서에 허용
 - * 同 업무들을 비상장기업에 대해 영위하는 것은 旣 허용 → 코넥스 상장기업까지 확대
- 전자단기사채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·주선·대리업무를 기업금융부서에서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
 - * 현재 국채, 지방채, 특수채, QIB채권, CP 등을 기업금융부서에서 취급할 수 있음
- ② (전담중개부서) 기관투자자 등에게 주식대차-매매에 이르는 서비스를 통합제공할 수 있도록 전담중개업무(프라임브로커) 부서가 전문투자자 대상 증권 대차업무와 공매도 주문 수탁업무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
 - * 전담중개업무부서에서 이루어진 대차업무와 연계된 공매도 주문 수탁업무만 허용
- ③ (집합투자부서) 자산운용사의 창의적 업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집합투자업 관련 정보교류차단장치 정비
 - 기업금융업무 중 SOC 등 실물에 투자하는 PEF 운용업무와 여타 펀드 운용업무 간 정보교류차단장치 완화
 - 투자자에게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펀드 투자 구성내역의 판매사 제공 제한 기간 완화 (2개월→1개월)
 - 자산운용사 임직원의 해외 PEF가 설립한 SPC 임직원 겸직·파견 허용
 - 겸영 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(은행, 보험)의 금융투자업무 영위 직원의 전보제한 규제(1년) 폐지
- ② 기존에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었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간 임직원 겸직(상근-비상근), 파견을 허용하는 등 겸직·파견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인력운용 효율성을 제고

- 특히 증권사가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도 해외 현지법인(非 집합투자업자) 등에 대한 인력파견이 가능해짐에 따라 증권사의 집합투자업 경영 장애요인이 해소

【 임직원 파견/겸직 완화 사항 】



- ③ 복합점포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와 물리적 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영업을 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이나 고객의 거래규모 등에 연동한 대가 지급을 허용

* (예) 은행이 증권사에 고객을 소개한 경우 증권사가 해당 고객의 거래대금,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수수료 수입 등에 비례하여 은행에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게 됨

(3) 신용공여 관련 제도 정비

개정취지

- 증권사 신용공여 업무(신용융자, 예탁증권담보대출)에 관한 낡은 규제들을 정비하여 투자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

주요내용

- ① 신용공여 한도(자기자본의 100%) 산정시 매도증권담보용자 금액을 제외

* (개정이유) 매도증권담보유자는 이미 매매가 체결된 매도증권의 매각 대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로,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점을 감안

② 투자자가 추가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담보증권의 범위를 **최초담보 범위와 동일하게 자율(negative)화**

* (개정이유) 신용거래시 최초 담보는 담보증권의 범위가 폭넓게 허용되나, 담보 부족을 이유로 추가 담보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담보증권의 범위가 거래소가 정하는 대용증권에 한정되어 투자유의종목 등의 담보활용이 제한되는 등 투자자 불편이 커지는 문제 발생

③ 투자자 채무불이행시 담보주식 반대매매 시기를 **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의 사전 합의에** 따르도록 자율화

* (개정이유) 현재는 증시 시가결정을 위한 호가에 따르도록 강제하고 있어 채권보전을 위해 투자자의 재산을 과다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, 장중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하여 보다 유리한 가격에 담보증권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 제공

④ 신용거래 계좌에 대한 **순재산액 규제(순재산액 100만원 유지) 폐지**

(4)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 확대 등 기타 개정사항

① 겸영업무 중 **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의 만기 제한(3개월) 폐지**

② **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** 업무를 증권사 겸영업무에 추가

③ 금융투자업자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**금융투자업자의 직접 대출을 허용**

* (개정이유) 현재는 채무보증만 허용됨에 따라 자체자금의 대여를 통한 자금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도 현지에서 높은 조달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

④ 자금중개회사 중개 대상기관에 **우정사업본부를 추가**

2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출현기반 마련

▶ **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모상품이 출현할 수 있게 되고, 적격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전용 채권시장**이 활성화됩니다.

▶ 투자자들이 **보다 다양한 ETF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되고, 해외 국채 증권에 대한 투자가** 간편해집니다.

(1) 전문투자자 범위 확대 및 사모상품 활성화

개정취지

- 전문투자자의 요건이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여 전문성 있는 투자자들이 투자에 불편함을 겪고, 금융투자업자들은 판매규제에 대한 부담으로 혁신적 상품개발에 소극적

주요내용

- ① 개인과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에 대한 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하고, 개별법상 집합투자기구들을 전문투자자 범위에 추가
 - * 개인 : 금융투자상품 50억 → ①금융투자상품 5억 & ②연소득 1억 또는 총자산 10억
외감대상법인 : 금융투자상품 100억 → 금융투자상품 50억
 - 전문성을 가진 투자자가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하에 보다 전문투자자로 등록하여 보다 편리하게 금융투자상품 투자 가능해짐
 - * 전문투자자 등록시 (i)복잡한 투자권유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, (ii)장외파생상품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으며, (iii)투자금액과 관계없이 헤지펀드·코넥스시장 등에 투자가 가능하고, (iv)모의거래·교육이수 없이 파생상품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등 규제가 완화됨
- ② 공·사모 판단시 모든 전문투자자를 청약권유 합산 대상(50인 이상인 경우 공모로 취급)에서 제외하여 전문투자자에게만 청약권유가 이루어지는 상품에 대해서는 공모규제를 적용하지 않음
 - * 현재 전문투자자 중 주권상장법인, 개인, 일반법인, 지방자치단체, 외국인, 외국법인 등은 공모 판단시에는 일반투자자로 취급하여 청약권유 대상자 50인 산출 대상에 포함
 - 공모규제의 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금융상품의 개발·판매가 활성화될 전망
- ③ 적격기관투자자(QIB) 전용채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관투자자 사모시장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공모 회사채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중견기업들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확대
 -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은 증권신고서가 면제되는 QIB 전용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의 직접금융시장 접근성을 제고
 - * 금융회사, 공기업, 상장법인 등도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인 경우 QIB시장 이용가능

- 외국기업의 경우 자산규모 제한 없이 QIB 전용채권 발행을 허용하여 위안화 채권 등 외화증권의 국내발행 인프라로 활용
- 다수의 적격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발행되어 공모증권과 유사한 QIB 전용채권*에 대해서는 NCR규제 부담을 완화**

* (요건) 발행정보 게시, 신용등급 산출, 다수기관투자자에게 청약기회 제공

** (혜택) NCR 규제상 차감항목에서 제외 →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위험액 산정

(2) ETF 시장 활성화

개정취지

- ETF시장 활성화, 운용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ETF가 자산관리서비스의 핵심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
- 이를 위해 ETF 수요기반 확충, 파생상품 관련 운용자율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

주요내용

- 1 다른 펀드의 ETF 투자제한을 완화하여 ETF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를 활성화
 - (i) 펀드가 ETF 발행 증권총수의 50%*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, (ii) 펀드가 자산총액의 100%까지 투자할 수 있는 다른 펀드의 범위에 채권형 ETF**를 추가
 - * 현재는 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 시 피투자펀드 증권총수의 20%까지 투자 가능
 - ** 다만,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채, 통안채 및 정부·지자체 보증채만 편입한 ETF로 한정
- 2 구조화 ETF의 활성화를 위해 손실 금액이 제한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ETF에 한해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를 확대(100%→200%)
 - * 손실금액 제한 인정요건 : (i) 레버리지 배율이 2배 이내일 것, (ii) 투자대상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의 가격변동폭이 제한될 것, (iii)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지 아니할 것
 - * (개정이유)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에 대한 엄격한 한도 제한으로 파생상품을 활용한 다양한 구조화 ETF 상품 개발에 한계 → 손실위험이 제한되는 ETF의 파생상품 편입 한도 확대
- 3 ETF 기초지수 요건을 완화하고, 해외 ETF의 국내 상장요건을 완화

하는 등 ETF 상품의 다양성을 제고

- ETF 기초지수 요건을 완화하여 기초지수 구성종목수가 200종목 이상인 경우 시가총액 75%에 해당하는 종목 기준으로 최저 규모요건* 판단

* (개정이유) 현재는 시가총액 순으로 85%에 해당하는 종목의 3개월 평균 시가총액이 150억원 이상 및 거래대금이 1억원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, 이러한 기준은 종목수가 많은 해외지수 등에 적용하기엔 과중한 규제인 측면

- 외국 ETF 등록요건 중 일반상품(commodity) 투자비중 제한 폐지

* (개정이유) 현재 집합투자재산의 20% 이내에서만 일반상품 투자를 허용하여 해외 ETF의 국내상장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, 국내 ETF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제를 두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 측면에서도 시정 필요성이 있는 상황

- ④ 레버리지인버스 ETF 등 투자위험이 높은 ETF에 대해 적정성 원칙* 적용

* 적정성원칙 :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투자자특성을 파악하고, 해당 상품이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않은 경우 이를 투자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주로 파생상품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적용

(3) 외국 국채 매출규제 완화 등 기타 개정사항

- ① 일정 등급 이상 우량한 신용등급을 가진 외국정부가 발행한 증권에 대하여 투자자 보호를 조건으로 증권(매출)신고서 제출면제

*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요건

- ① 2개 이상의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 등급 이상 받을 것
- ② 증권에 관한 정보 등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것
- ③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투자자에게 사전에 설명할 것

- ② 개인연금신탁 등 손실의 보전이 가능한 신탁상품의 신규가입을 제한하여 연금자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여건 마련(2018. 1. 1일부터 제한)

* 사전에 손실보전을 약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, 보수적인 운용을 원하는 고객은 예금 등 원금보장상품을 편입(특정금전신탁 형태)하면, 납입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음

- ▶ 금융투자업자와 그 임직원들의 **각종 인가, 보고의무 등이 간소화되고 실무상 불편을 주었던 규제들이 정비됩니다.**
- ▶ 기업의 **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부담**이나 **펀드의 지분공시 부담**이 합리적으로 줄어듭니다.

(1) 인가 및 보고의무 관련 제도 정비

개정취지

- 현장 건의 등을 통해 확인된 인가, 보고의무 관련 불합리한 규제, 불필요한 절차 등을 폐지하여 현장의 실무상 애로를 해소

주요내용

①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규제 합리화

-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를 통해 사적이익을 편취하기 어려운 **지수형 ELS***를 임직원 자기매매 규제대상에서 제외

* 30종목 이상의 상장 지분증권 또는 DR로 구성된 지수를 추종하는 ELS를 제외

- 아울러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대해서는 분기별 통지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

*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매매 등의 운용을 금융투자업자가 담당하므로 임직원이 금융투자업자에게 별도로 통지할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

② 등록을 통해 진입하는 금융투자업은 상대적으로 회사 규모가 작은 점을 감안하여 지분보유 임원의 주요주주 요건을 지분을 5%이상으로 조정

* 투자자문업, 투자일임업, 전문사모집합투자업,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방식의 투자중개업 이외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에 대해 적용 → 스톡옵션 부여 등의 편리성 제고

* 인가를 통해 진입하는 일반적인 금융투자업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1% 유지

③ 금융투자업자가 「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해외 현지법인, 지점, 사무소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 경우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른 중복 보고의무를 폐지

④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인가시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
결격사유*가 되지 않도록 예외를 신설

* 최근 5년간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, 금융관련법령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
및 「조세범처벌법」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대주주 결격사유가 됨

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청인 금융위에 부과 사실을 다시
보고해야 하는 불합리한 의무를 폐지

⑥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대상 대주주의 범위에서 국민연금공단을 제외

* 현재 예금보험공사, 자산관리공사는 심사대상 대주주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음

(2) 공시규제 정비

개정취지

□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온 규제완화 요청들을 법령에 반영하여,
과중한 공시부담을 합리화

주요내용

① 증권신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 공시사항 중 상호 중복*되거나, 중요성이
낮은 항목**을 주요사항보고서 공시항목에서 삭제

* 주식 및 주식형 사채(조건부자본증권)의 발행 관련 사항

** 영업전부 양수의 경우에도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공시 면제

② 집합투자기구의 적극적 투자집행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 다른
전문투자자와 같이 완화된 소유주식공시 보고기한 적용

* (현행)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 → (개정) 해당 분기의 다음달 10일 까지

(3) 불필요한 규제부담 경감

① 지점별 영업관리자가 파생상품영업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

②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시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의 교부를
투자자가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설명서 수령거부 의사표시 방법을
전자우편 등 비대면방식으로 확대

- ▶ **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에 대한 공시제도가 도입됩니다.**
- ▶ **ELS, 조건부자본증권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됩니다.**

(1) 공매도 잔고 보고·공시제도 정비

개정취지

- 공매도의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매도 관련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충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공매도 잔고 보고·공시제도 정비

주요내용

- 1 (투자자별 잔고공시 기준 설정) 상장주식에 대하여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(-)로서 그 절대값이 0.5%이상인 경우 매도자에 관한 정보* 등을 사유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증권시장(시간외시장 포함) 종료 후 공시

* (i) 해당증권에 관한사항, (ii) 매도자와 대리인의 인적사항
(iii) 순보유잔고 공시기준에 해당하게 된 일시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

- 2 (투자자별 잔고보고 기준 조정)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(-)로서 그 절대값이 0.01% 이상인 경우에도 순보유잔고 평가액이 1억원 미만이면 공매도 잔고 보고대상에서 제외하여 소액투자자들의 보고부담을 경감

- 아울러 순보유잔고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순보유잔고 비율에 관계없이 보고대상에 포함

*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경우 순보유잔고 비율 0.01%가 금액기준으로 수십~수백억원에 달하여 잔고보고의 공백이 발생

- 3 (과태료 부과 등 관리 강화)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잔고 보고·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명시 → 미보고·지연 보고 등에 대한 관리 강화

- 4 (종목별 공매도 잔고정보 제공) 각 종목별 보고대상 공매도 잔고를 합산한 종목별 공매도 잔고정보를 한국거래소가 투자참고지표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제공

(2) 고위험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

개정취지

- 파생결합증권을 통해 조달한 자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, 조건부 자본증권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

주요내용

- ① 파생결합증권(ELS, ELB, DLS 등)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시 포함 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여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

- * ①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은 그 밖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
- ②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의 구분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
- ③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의 투자대상자산의 요건에 관한 내용

- 아울러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운용내역 및 투자대상 자산의 요건 및 준수여부 등을 업무보고서를 통해 보고

- ② 투자위험도가 높은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하여 일괄신고서를 통한 증권 발행이 제한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화

- * 실무상 일괄신고서 제출을 제한하고 있으나, 규정상 가능한 것으로 오인 소지

5 그 밖의 개정사항

- ▶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**이사회의 배당결정 이유 등에 대한 보고**를 받게 되고, **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발행증권 보유가 더욱 엄격히 금지되는 등** 여러 가지 제도들이 개선됩니다.

개정취지

- 반복적인 규제완화 요청이 있었던 사항이나 애매한 표현으로 실무상 혼선이 있는 부분들을 정비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

주요내용

- ① 다자간매매체결회사(ATS)의 경쟁매매 거래량 한도를 시장전체 기준 15%, 개별종목 기준 30%까지 상향 조정
 - * 현행 시장전체 5%, 개별종목 10%의 3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
 - * 「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방안」(15.7.2)에서 시장전체 10%, 개별종목 20%로 완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, 이후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 완화 폭을 확대
- ②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위해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보유할 수 없도록 명확화
 - * (개정이유) 현재 법률에서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의 보유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(법 제34조제1항제1호), 시행령에서 신용공여적 성격의 증권보유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실무상 혼선이 발생
- ③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고객에 대한 형사고발·수사기관 신고, 직원에 대한 법률 지원, 직원 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
- ④ 상장법인이 이사회에서 배당을 결정한 경우 (i) 배당액의 산정근거 (ii) 배당성향의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 그 내역 및 이유를 주총에 보고하도록 규정

II. 향후 시행일정

-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, 금융투자업규정 등은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시기에 맞추어 6.30일부터 시행될 예정
- 다만, 다음 사항은 각각 부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날에 시행
 - 적격기관투자자 사모시장 관련 제도개선 : 2016. 8. 1
 - 지점별 영업관리자의 파생상품영업관리자 겸직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: 2016. 10. 1
 - ELS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의 마련 등 : 2017. 1. 1
 - ATS에 대한 규제완화 : 2017. 6. 30
 - 손실보전신탁의 신규가입제한 : 2018. 1. 1.

□ 전문투자자 등록, 공매도 잔고 보고·공시 등에 관한 문의사항은 다음
연락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

○ (전문투자자 등록)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운영팀 02-2003-9391

○ (적격투자자 전용 사모시장) 금융투자협회 채권부 02-2003-9122

○ (공매도 잔고 보고·공시제도)

- 보고·공시의무 이행방법 등 :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총괄팀 02-3145-7573

- 투자자별·종목별 공매도 잔고 공시정보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

: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매매제도팀 02-3774-8595

: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주식매매제도팀 02-3774-9615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